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22년 3월 | 2022/03 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PCT 시행세칙 개정: 부속서 F(국제출원의 전자적 출원 및 처리 표준) 및 부속서 F의 부록 I

관련 관청 및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세칙 부속서 F(Annex F) 및 부속서 F의 부록 I(Appendix I, e-PCT 표준을 위한 XML 문서유형정의(DTD)) 개정사항이 2022년 7월 1일을 발효일로 하여 공포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국제출원 시 WIPO 표준 ST.26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일자 전에 제출된 국제출원을 처리하는 데에는 WIPO 표준 ST.25 파일이 계속 사용됩니다.

부속서 F 및 부속서 F의 부록 I의 개정 통합본은 아래 페이지 오른쪽에서 문서 PCT/AI/ANF/7 및 PCT/AI/DTD/16을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texts/index.html>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WIPO ST.26 시행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FAQ)

새로운 WIPO 표준 ST.26에 따른 서열목록 제출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FAQ)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 또는 그 후에 서열목록이 포함된 국제출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출원인께서는 중요한 정보이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내용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앞으로 제공될 PCT 세미나, 웨비나 및 기타 PCT 관련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본 뉴스레터의 영문판에 제공되는 PCT 세미나 일정(PCT Seminar Calendar)을 참고하세요.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standards/ko/sequence/faq.html> (한국어)

영어 등 다른 언어는 페이지 상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용한 도움말

우선권서류 제출 요건의 충족

Q: 선 출원된 국내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PCT 국제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PCT 에 따른 우선권서류 제출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A: PCT 규칙 17.1 에 따라, 국제출원에서 하나 또는 복수의 선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인은 선 출원된 국내출원 각각의 인증등본(certified copy, 즉 우선권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출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용 가능한 방법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리관청에 우선권서류의 준비 및 송부 요청

국제출원에 대해 수리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청과 동일한 관청에 선출원이 제출된 경우 이용 가능한 방법은 PCT 규칙 17.1(b)에 따라 해당 수리관청에 우선권서류를 준비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원서 서식(PCT/RO/101) 제 6 기재란 (“우선권주장”)의 해당 박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선일로부터 16 개월 이내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ePCT¹(<https://pct.wipo.int>)로 국제출원을 준비할 때에는 추가된 선출원이 선택된 수리관청과 동일한 관청에 제출된 경우 “우선권주장” 화면에 수리관청이 우선권서류를 준비하여 송부하도록 하는 옵션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수리관청은 우선권서류 제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각 수리관청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C 참고).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이용

다른 방법은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출원을 제출한 관청(제 1 청(OFF))이 DAS 기탁관청(depositing office)인 경우, 우선권서류로 사용될 선출원의 전자 인증사본을 입수하도록 국제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DAS 는 수리관청이 제 1 청이 아니고 따라서 PCT 규칙 17.1(b)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따라서, 제 1 청이 기탁관청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¹ 수리관청으로서의 미국 특허상표청에 국제출원을 제출할 예정이고 해당 국제출원을 ePCT 를 통해 준비하는 경우, ePCT 출원 데이터 패키지를 생성 및 다운로드하여 ePCT 와 별개로 동 청의 출원시스템에 제출해야 함.

현재 DAS 에 참여하고 있는 34 개 관청들의 두자리 국가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AR, AT, AU, BE (입수관청(accessing office)만), BR, CA, CL, CO, CN, DK, EA, EE, EP, ES, EUIPO (산업디자인 출원만), FI, FR(기탁관청만), GB, GE, IB, IE (입수관청만), IL, IN, IT(기탁관청만), JP, KR, LV, MA, MX, NL, NO, NZ, SE, US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

DAS 를 이용하실 수 있고 이용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제 1 청에 (제 1 청이 이미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선출원의 사본을 DAS 에 제공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 방법은 해당 제 1 청의 구체적 요건을 따릅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ipo.int/das/en>

아래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 의 해당 부분에 나온 제 1 청에 대한 내용에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선출원의 사본을 DAS 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해당 선출원과 관련된 DAS 코드가 출원인에게 제공됩니다. 아니면, 선출원의 처리 시 출원인에게 제공된 코드가 접근코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접근코드가 해당 선출원에 대한 EFS-Web 전자 접수 확인서에 명시된 확인번호입니다.

다음으로, 출원서 서식(PCT/RO/101) 제 6 기재란의 해당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 선출원의 접근코드를 기재하여 국제사무국이 해당 국제출원 파일에 대한 우선권서류를 입수하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ePCT 로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 화면에서 “국제사무국이 전자도서관(DAS)에서 입수” 옵션을 선택하고 접근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PCT 는 DAS 에서 실시간 조회를 통해 접근코드를 인증하고 해당 우선권서류가 전자도서관에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인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기록원본(record copy)의 수신 후 국제사무국의 처리시스템에서 해당 우선권서류를 자동으로 입수합니다. 국제사무국이 우선권서류를 입수하도록 출원 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출원 후에도 ePCT 에서, 강력 인증으로 로그인 후 “DAS 에서 우선권서류 입수” 액션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 1 청에 우선권서류를 DAS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국제사무국에 DAS 에서 우선권서류를 입수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PCT 뉴스레터 2019/11 호 및 2019/12 호에서 각각 안내된 바 있습니다.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newslett/2019/11_2019.pdf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newslett/2019/12_2019.pdf

추가 내용은 아래 DAS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https://www.wipo.int/das/en/description.html>

PCT 규칙 17.1(b-의 2)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DAS 에서 우선권서류를 입수하도록 요청하는 기한은 PCT 규칙 17.1(a)²를 따르므로, 해당 기한은 아래 두 경우가 모두 충족 시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선출원이 제출된 관청에 대해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한 경우
- 국제출원 공개일 전에 국제사무국에 접근코드를 포함한 유효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DAS 에서 우선권서류를 입수하는 데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제사무국에 직접 우선권서류 제출

마지막으로, 선출원의 인증등본이 이미 있는 경우, 이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인증등본이 전자적 형식(PDF)이고 해당 발급 관청의 인증서와 함께 디지털 서명이 들어가 있으면, ePCT 에 (강력 인증으로 또는 강력 인증 없이) 로그인해서 “문서 업로드” 기능을 통해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본 뉴스레터 작성 시점에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인증등본을 발급하는 관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AT - 오스트리아 특허청
- BR -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 CZ - 체코공화국 산업재산청
- FR - 국가산업재산기관(INPI)(프랑스)
- IT - 이탈리아 특허상표청
- PL - 폴란드공화국 특허청
- PT - 국가산업재산기관(포르투갈)
- US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상기 방법들 중 이용 가능한 것이 없으면, 국제사무국에서 문서 송부 방식으로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나, 우선권서류의 인증등본을 택배나 우편서비스를 통해 국제사무국 앞으로 직접 송부하실 수 있습니다.

² PCT 규칙 17.1(a)에 따라 출원인은 우선권서류를 우선일로부터 16 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이나 수리관청에 제출해야 함. 단, 국제사무국이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접수한 선출원의 사본은, 해당 국제출원의 국제공개일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한 경우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됨.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무국에서 제 3 자에게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사본 제공

PCT 규칙 94.1(c)에 따른 선택관청의 통지

전자적 통신수단의 이용 불가능으로 인한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PCT 규칙 82 의 4.2)

PCT 규칙 82 의 4.2 에 따른 통지(유럽 특허청)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PPH)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러시아 연방지식재산부(Rospatent)와의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종료

PCT 정보 업데이트

DE 독일 (국내단계 진입 기한)

EP 유럽 특허청 (수수료)

IE 아일랜드 (위치 및 우편주소)

SE 스웨덴 (수수료)

XV 비세그라드 특허청 (전화번호, 통신수단)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수수료 (유럽 특허청,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스웨덴 지식재산청, 북유럽 특허기구)

국제예비심사 관련 수수료 (유럽 특허청, 스웨덴 지식재산청)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새로운 ePCT 동영상 튜토리얼

PCT 출원인 가이드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버전)

새로운 웨비나 녹화자료

유럽 특허청 - 유럽 특허청, 서식 **PCT/RO/105** 송부 시의 관행 변경

유럽 특허청 - **PCT-EPO** 가이드라인 업데이트